

의안번호	2112557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1.10. 20.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은 다음과 같음

[표 1]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조항	재정수반요인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제1호) -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2호) -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3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 -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 -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7호) -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8호) •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3항)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등 (안 제8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의 조사·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제1호) -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제2호) -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제3호) - 근로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제4호)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제5호)

조항	재정수반요인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 등 (안 제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둠(제1항) -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안 제10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제1호) -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제2호) -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제3호) -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지원(제4호) -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제5호)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6호)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한 노동전환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노동전환의 지원(안 제12조)	-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호) -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제2호) -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제3호) -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제4호) -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제5호)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제6호) -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제7호) - 근로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8호) - 그 밖에 노동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제9호) -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조항	재정수반요인
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3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근로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12조의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의한 지원의 기준과 대상 및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원(안 제1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
세제 지원(안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¹⁾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3항)

- 1)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 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등(안 제8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의 조사·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²⁾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 등(안 제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둠(제1항)
-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안 제10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³⁾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한 노동전환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
- 2) 1.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근로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3) 1.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3.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4.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지원
 5.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노동전환의 지원(안 제12조)

-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⁴⁾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근로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12조의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의한 지원의 기준과 대상 및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안 제15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4)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근로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노동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

□ 세제 지원(안 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⁵⁾
- 이를 위해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전환분석센터 및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및 제10조),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제정안의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일부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가 없고 향후 발생할 사업 규모를 예상하기가 힘들어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5) 제정안의 제1조(목적)에서 발췌

[표 2]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조항	추계 여부	비고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 규모 등 추정 곤란
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등(안 제8조)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 등(안 제9조)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안 제10조)		
노동전환의 지원(안 제12조)		
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안 제15조)		
세제 지원(안 제16조)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정수반요인별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1항)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제3항)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심의회 개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4항) 하고 있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전이므로 향후 발생할 연구·용역비와 심의회 개최 비용을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_t + \text{심의회 개최 비용}_t]$

-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 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등(안 제8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하므로(제1항)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한 비용이 예상되나, 현재 조사·분석을 위한 계획 수립 전이므로 향후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조사·분석 비용}_t]$
 -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 등(안 제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두어야 하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제3항)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미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불가능함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분석센터 설치·운영비}_t \times \text{정부지원율}_t]$
 -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 노동전환 분석센터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참고자료1을 참고바람
- ※[참고자료1] 노동전환 분석센터 개요

□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안 제10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⁶⁾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

6) 1.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3.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4.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지원
5.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는 단체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 지정한 노동전환지원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제2항)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항), 지원센터 설치 혹은 지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미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불가능함

$$\text{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지원센터 설치비}_t + (\text{운영비}_t \times \text{정부지원율}_t)]$$

-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 노동전환 지원센터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참고자료2를 참고바람

※[참고자료2] 노동전환 지원센터 개요

□ 노동전환의 지원(안 제12조)

-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⁷⁾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제1항)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노동전환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항),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불가능함

$$\text{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수}_t \times \text{지원 단가}_t]$$

-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 노동전환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참고자료3을 참고바람

※[참고자료3] 노동전환 지원금 개요

□ 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 7)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근로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노동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근로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12조의 노동 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제1항)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제1항에 의한 지원의 기준과 대상 및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항), 관련 사업이 현재 계획 단계로써 향후 발생할 사업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불가능함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단체등의 수}_t \times \text{평균사업비}_t \times \text{지원 비율}_t]$
 -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계획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4를 참고바람
 - ※[참고자료4]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개요

□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8)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9)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향후 지원이 필요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규모와 사업비용 및 정부 지원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9)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힘들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불가능함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우선지원이 필요한 대상기업의 수}_t \times \text{평균사업비}_t \times \text{지원비율}_t]$
-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안 제15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힘들고, 이와 연관한 일자리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미비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불가능함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sum_{all\ i} [\text{일자리지원을 위한 사업비용}_{it} \times \text{지원비율}_{it}]$
 -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i 는 지자체의 종류를 나타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계획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5를 참고바람
 - ※[참고자료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 세제 지원(안 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정수입감소액이 예상됨
 - 그러나 현재 노동전환 실시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이에 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불가능함
 - 재정수입감소액 = $\sum_{t=2022}^{2026} [\text{노동전환 실시 기업의 세금 감면액}_t]$
 - 이때 t 는 추계기간(2022~2026년)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정안의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참고자료1] 노동전환 분석센터 개요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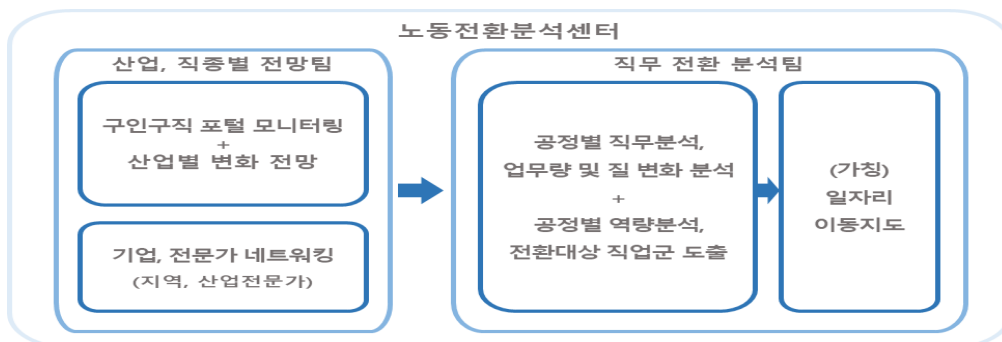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취약업종·유망업종을 전망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취약업종 맞춤형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데이터 도출
 - － 노동전환컨설팅, NCS, 직업훈련 설계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종전망, 업종별 전환 방향 데이터 생산

□ 사업 내용

- (업종전망)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종전환에 따른 취약업종과 유망업종 전망
 - － 설문조사 결과 및 ISC, RSC와의 협력으로 업종·지역별 취약·유망업종 추계
 - － 회계법인, 경영컨설팅 전문가, 애널리스트, VC, 펀드매니저, PEF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구조화된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취약·유망업종 추계 자료로 활용
- (직무전환 분석) 업종전망 결과 예상되는 취약·유망업종 직무분석 실시 및 업종별 전환 방향 설정
- (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노동전환분석센터

□ 노동전환 분석센터 구성(안)



□ 연도별 예산 및 물량(고용노동부 예산)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11억	11억	11억	11억
산출근거	1개소 X 11억원	1개소 X 11억원	1개소 X 11억원	1개소 X 11억원

1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참고자료2] 노동전환 지원센터 개요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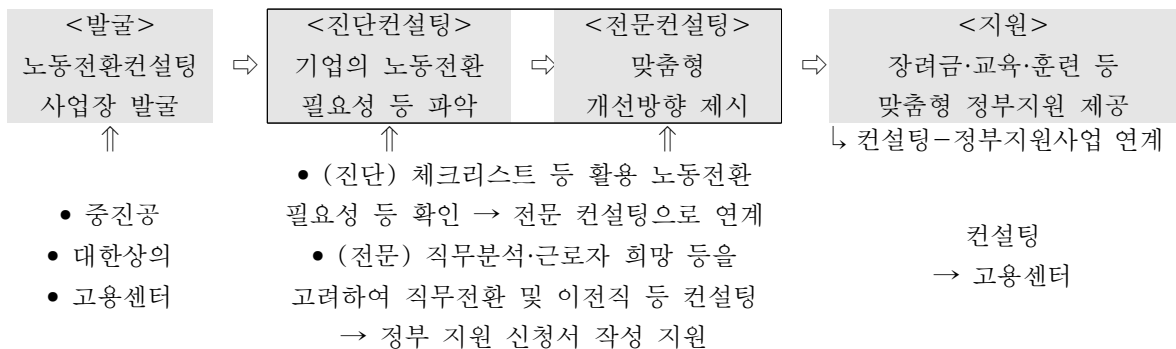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기업이 재직자의 직무전환 및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제공
- 산업부 및 중기부와 협업하여 사업재편·전환 지원 + 노동전환지원 통합 컨설팅 실시

□ 사업 내용

- (대상)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및 희망 기업
 - 사업재편·전환 컨설팅과 연계하여 노동전환 컨설팅 실시
- (노동전환 컨설팅)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 사업 패키지 컨설팅*(장려금, 교육, 훈련 등)
 - (진단) 기업현황(매출, 생산품 등), 인력 수요, 직무 변화 등을 통해 전문 컨설팅 필요성 여부 확인
 - (전문) 근로자 직무 전환·역량강화 및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 실시 → 노동전환 정부 지원 사업* 연계
 - * 노동전환지원금, 유급휴가훈련, 재직자 디지털 융합 훈련 등
- (수행기관) 대한상공회의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노동전환 컨설팅 절차(안)



□ 연도별 예산 및 물량(고용노동부 예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46억	46억	46억	46억
산출 근거	(진단컨설팅 800건×50만원) + (전문컨설팅 500건×800백만원) + (운영비 2억원)			

1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참고자료3] 노동전환 지원금 개요¹²⁾

□ 사업 개요

-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생애경력설계교육, 재취업세미나, 창업 상담, 면접 교육, 심리지원, 적성검사, 취업알선 등

□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및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 기업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
- (요건) 노사협의를 거쳐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직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단, 전직지원의무화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은 직무전환 교육만 해당)
 - (자체 실시) 사업주가 직무전환·전직지원을 위해 강사 등을 초빙하여 자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탁 실시) 직무전환교육·전직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 관련 소요 비용(실비)을 전액지원하되, 한도는 ‘참여 근로자 × 300만원’로 설정
- (지원기간)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 실시 후 12개월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고용센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전환·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 신청

직무전환·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계획서 승인 고용센터	직무전환·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	----------------	----------------------------	-------------------------	--------------------------------------

□ 연도별 예산 및 물량(고용노동부 예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53억원	53억원	53억원	53억원
산출근거	(2.3천명×220만원) + (운영비 2억원)			

-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이나 예산은 평균예상지원단가 220만원 반영

1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참고자료4]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개요¹³⁾

□ 사업 개요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전직지원·고용유지 등에 상생하기로 합의한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및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 기업
- (요건) 근로자들의 전직지원 및 직무전환 훈련 등을 통한 고용유지 등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
 -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범위)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 등 지원
 - *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활용
- (지원금액) 최대 5억원 한도 사업주 투자의 50%
 -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 (지원기간) 신청 후 최대 1년 지원
- (지원 절차)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계획서 심사 후 지원 기업 선정
→ 사업주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

고용안정협약 계획서 제출	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유지협약 이행·인프라 투자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연도별 예산 및 물량(고용노동부 예산)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50억원	50억원	50억원	50억원
산출근거	50개 기업 X 1억원	50개 기업 X 1억원	50개 기업 X 1억원	50개 기업 X 1억원

1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참고자료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개요¹⁴⁾

□ 사업 개요

- (목적)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 위기에 선제 대응
 - ‘19.9.3, 일자리위원회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에 포함 발표, ’20년부터 사업 실시

□ 내용

- (지원대상) 現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 정량·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컨소시엄

유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요건
정량 요건	▶ 직전 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동기간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3%p 이상 낮은 경우 (or)
	▶ 직전 1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3% 이상 감소한 경우 (or)
	▶ 직전 1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or)
	▶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정성 요건	▶ 취업자수 감소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컨소시엄별로 연간 40~140억원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40% 대응자금 부담
- (향후계획) 매월 사업현황 모니터링, 분기별 합동 현장점검 등 성과 관리
- (’22년 변동사항) 지원 총액 증가(46억 증), 사업 물량 확대 검토 중

□ 연도별 예산 및 물량(고용노동부 예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645억	691억	893억	893억	893억
산출근거	9개 컨소시엄 × 71.6억원	9개 컨소시엄 × 76.8억원	10개 컨소시엄 × 89.3억원	10개 컨소시엄 × 89.3억원	10개 컨소시엄 × 89.3억원

14)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	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보	지수현
연 락 처	02-6788-3735
	zisu37@nabo.go.kr
